

IV. 주요국의 보험지주회사제도

1. 미국

가. 지주회사 설립배경 및 종류

1) 설립배경

최근까지도 미국은 업종간 장벽을 엄격히 하는 분업주의를 고수하였으나 1999년말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의 겸업을 완전 허용하였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금융산업을 보면 대공황 이전에는 은행·증권의 겸업이 활발했으나, 은행과 증권의 밀착이 대공황의 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1933년 분업주의로 전환하였다. 이후 증권화, 업무영역 규제 등으로 인해 은행수익이 악화된 데 기인하여 1956년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 BHC)를 허용하였다.¹⁾ 미국에서 금융업의 대형화 및 겸업화가 진전된 이유로는 1980년대 미국 내 여타 지역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이후 1999년말 금융개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므로써 겸업화를 완전 허용하되²⁾, 일반기업의 금융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은 강화³⁾하므로 산업자본에 의한

1) Greenspan은 1980년 후반부터 미국 은행의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하여 대형화 및 겸업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정책화되어 규제의 변경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Calomiris, Charles W(2000), pp,338-339).

2) 2000년 5월 증권사인 찰스스왑이 증권 은행지주회사인 U.S. 트러스트를 인수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하여 GLB법 통과 이후 증권사가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첫 사례가 되었다. 현경일(2000),p.7.

3) 일반기업의 저축대부조합(S&L) 설립 및 인수를 통한 금융업 진출을 금지하였다.

금융업의 지배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과의 분리규제는 은행소유에 따른 것이지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에는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등이 있는데, 이중 은행지주회사가 중심이 되어 발전되어 왔다.⁴⁾ 미정부는 이러한 은행지주회사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1920~30년대에 은행업에 대해 주(州)간 규제와 업종(業種)간 규제를 실시하였다. 즉, 1927년 McFadden법⁵⁾을 제정하여 2개 주(州) 이상에서 동시에 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적 규제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는 사후 대책차원에서 1933년 Glass-Steagall 법⁶⁾을 제정하여 은행업과 증권업(투자은행업)을 분리토록 하는 업종간 규제 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들은 은행지주회사를 통하여 주(州)간 규제와 업종간 규제를 회피하면서 업무영역의 확대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고 이들의 무절제한 업무확장이 문제시됨에 따라 신규설립 및 영업점 등을 규제하기 위해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⁷⁾

1994년 Riegle-Neal법을 제정하여 주(州)간 규제가 폐지되었고, 1999년 GLB법을 제정하여 Glass-Steagall법의 4개 조항 중 자회사 방식의 겸업을 제한하는 2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업종간 규제도 완화하였다. GLB법의 목적은 기존의 전업주의를 완화하여 국제경쟁력

4) 이우광(2004), p.124.

5) McFadden법은 주 경계를 넘어서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다.

6) Glass-Steagall법은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증권업무)의 분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Glass-Steagall은 입법자의 이름이고 정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The Banking Act of 1933)이다.

7) 이우광(2004), p.128.

을 갖춘 복합금융그룹의 탄생을 돕고자 하는 것이었다. GLB법은 미국 연방법(US Code)의 "Banks and Banking"편의 개정법률로 1999년 기준에 금지하던 은행의 증권 및 보험업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적용하던 규제를 금융지주회사에서는 해제한 것이다. 즉,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을 포함하는 경우로 은행지주회사가 요건을 갖추어 연방준비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 및 증권업 겸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GLB법 제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갖춘 은행지주회사는 별다른 추가규제 없이 다른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금융시장의 흐름에 부응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종류 및 체제

미국은 지배하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로 구분되며,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federal reserve board)에 신고한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지주회사의 근거법은 지주회사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지주회사법(BHCA), 투자은행지주회사인 경우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SEA), 보험지주회사인 경우 州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은행지주회사법 및 GLB법 등이다.

지주회사의 종류별로 감독당국도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는 FRB, 투자은행지주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ttee), 보험지주회사는 각 주 보험감독청(insurance department)이다. 미국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및 금융기관별 감독당국을 보면 <그림 IV-1>, <표 IV-1>과 같다.

<그림 IV-1>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체제

종류	감독기관	근거법
은행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은행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HCA, GLB
투자은행지주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법
보험지주회사	주 보험감독청	주 보험업법

<표 IV-1> 미국의 금융기관 감독권한

금융기관별	연방감독당국					주 당국
	FRB	OCC	FDIC	OTS	SEC	
금융지주회사	◎					
은행지주회사	◎					
연방은행(FRS-FDIC 강제가입)		●	○			
주법 은행	FRS 가입(FDIC 강제가입)	◎	○			●
	FRS 비가입, FDIC가입		◎			●
	FRS 비가입, FDIC 비가입					●
저축 금융 기관	저축금융기관지주회사			◎		
	연방면허금융기관(FDIC 강제가입)		○	●		
	주면허금융기관(FDIC 가입)		○	◎		●
	주면허금융기관(FDIC미가입)					●
증권회사/증권지주회사					●	
보험회사/보험지주회사						●

주 1) ● 면허여부(증권은 등록제) 및 제1감독권한 ◎ 제1감독권한
○ 연방예금보험자로서 검사권한

2) FDIC :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TS : 저축금융기관감독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SEC : 증권거래위원회
FRS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자료 : 損害保險事業綜合研究所(2005.9), pp.194-195

나. 보험지주회사제도

1) 설립배경

미국의 보험회사는 상호회사, 주식회사 등 회사의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1980년대 이후 사업 다각화차원의 은행·증권업으로의 진출을 추진해왔다. 우선 보험회사들은 교차판매(cross selling)에 따른 판매력 강화, 투자은행기능 확보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증권회사 등 타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보험법상 지주회사 규정은 자회사의 업종 및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타 금융업(은행업무 포함) 진출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 GLB법의 통과 이전에는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은행업 진출이 불가능하여⁸⁾ 저축금융기관 등을 통해 은행 업무에 우회적으로 진출하였다. 보험회사는 은행의 직접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법(1956)에서 제외된 업무 즉, 저축성 예금업무와 소비자 대출만을 수행하는 여신전문기관을 보유했으며 주로 부실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s)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은행 업무에 진출하였다.⁹⁾ 그리고 금융제도 개혁 이후에는 규제가 적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보험회사는 연방저

8)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게 되었다. 이태규(2006), p.53.

9) BHCA로 규제할 수 없는 형태의 금산결합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법적으로 개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은행과 일반기업의 지배력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BHCA 제정 당시 은행지주회사는 ‘두개 이상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은행을 하나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BHCA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하나의 은행을 소유하는 형태(One-Bank Holding Company)의 금산결합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규제는 1970년에 법 개정으로 하나의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도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규제되게 되었다. 이태규, p.53.

축은행(thrift institution)¹⁰등 저축금융기관의 설립·인수로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은행업무로의 진출목적은 자사 고객에 대한 신탁서비스 제공 및 개인 대출(자동차, 주택관련, 신용), CD, 저축·결제계좌, ATM 데빗카드, 신용카드 등 전통적인 은행서비스 제공에 있었다.

소비자 대출과 기업 대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저축금융기관은 은행과 업무가 비슷하면서 보험회사의 자회사 취득이 가능하고, 지점설치가 자유롭고 시너지 효과가 커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유연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의 막강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자사의 기존·가망고객을 은행 고객으로 유치하므로써 또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게 되었다. 특히 저축금융기관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진출하는 경우 자사의 지명도와 신뢰도, 기존 영업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낮은 인수 및 운영경비를 들이고도 은행업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축금융기관을 통한 은행업 진출이나 투자형상품 시장 공략을 위한 증권·투신업 진출은 전 금융업종을 망라하는 거대한 금융그룹의 출현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보험업 등 소매금융업무를 보강하기 위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진출방식도 주력기업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많아 엄밀한 의미로 보험지주회사라기보다는 보험그룹의 개념에 가까웠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1999년 금융개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은행·증권·보험간 겸업을 대세로 인정하고 금융개혁법 제정에 대응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자금조달 능력을 확충한 생보사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회사의 대형화 전략에 맞서 고객 확보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주력하는 경영전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처럼 금융기관간 구분이 없어지고(convergence), 은행과 보험의 상호 보유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대방 업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보험회사간 합병이나 소규모

10) savings bank 또는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의 일반적 명칭이다.

합병이 많았으나 점차 이중 업종간 합병이 증가하고 합병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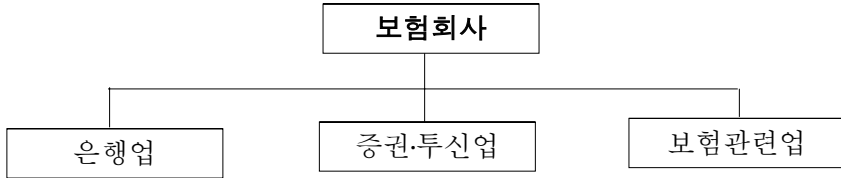
소유구조도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상호회사에서 벗어나 주식회사(보험지주회사)나 상호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었다.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자금조달, 회사 인수, 전략적 제휴 체결 등이 절세, 투자의 유연성, 구조조정 등에서 상호회사에 비해 유리하게 되었고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바탕으로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보험상호지주회사(mutual holding company)는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으나 전환비용이 적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활용되었다. 최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공개를 마친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능력을 확충, 대형화·겸업화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반면 소형사는 보험전문회사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 사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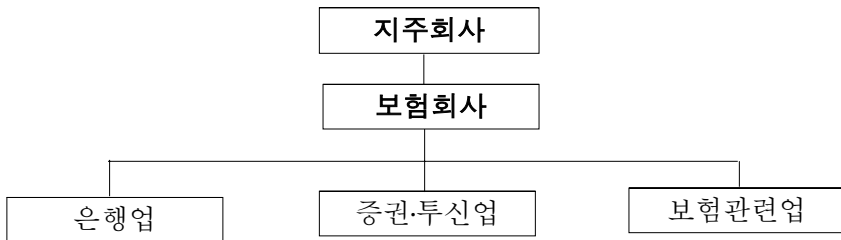
미국 보험지주회사의 소유구조는 매우 다양하여 순수형 지주회사, 사업형 지주회사 또는 사업형지주회사의 변형된 형태가 상존한다. 대형 보험회사중 특히 생보사의 경우는 상호회사가 많아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았고 특히 업무영역 규제로 보험 및 관련 업무에 한정된 업무를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보험지주회사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자회사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이 혼용된 소유구조가 존재하는 등 소유구조에 일정한 패턴은 없다. 순수형 보험지주회사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유럽계 보험금융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V-2>과 <그림 IV-3>는 각각 자회사방식의 보험그룹과 순수형 보험지주회사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IV-2> 자회사방식 보험그룹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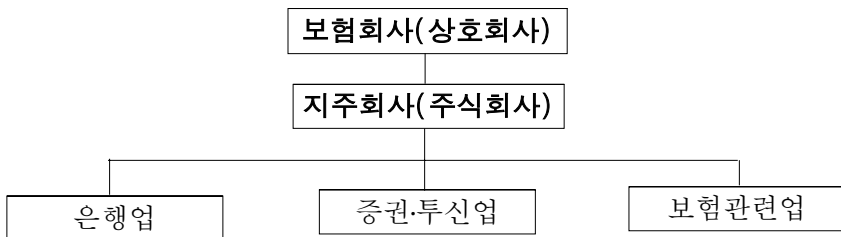


<그림 IV-3> 순수형 보험지주회사 형태



1996년 설립된 상장 지주회사인 Nationwide Financial Service는 상호 회사인 Nationwide(손해보험회사)가 대주주이며 지주회사 산하에 생명보험과 연금 퇴직저축상품을 취급하는 생보 자회사를 두는 소유구조를 택하고 있다. 신설된 Nationwide Financial Service는 대주주인 Nationwide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주식회사로 전환한 보험지주회사는 핵심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며 기타 비주력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IV-4>는 상호회사의 보험지주회사 형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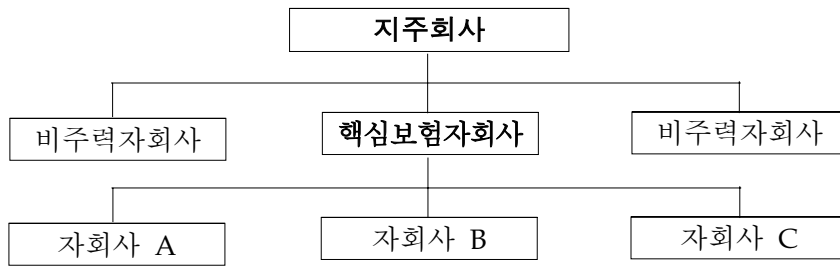
<그림 IV-4> 상호회사의 보험지주회사 형태



미국 보험지주회사의 사업영역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특화된 경우나 생존보를 영위하는 보험전문그룹 형태가 많고 그 외 생명보험과 연금, 무추얼펀드 등 개인 투자형상품을 취급하며 소매금융시장을 공략하는 경우도 있다. 자회사 방식과 유사한 사업형 보험지주회사는 주력 보험회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의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활용되며 전략적 기능은 사업지주회사나 핵심 자회사가 수행하게 된다.

<그림 IV-5>는 사업다각화형 지주회사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IV-5> 사업다각화형 보험지주회사 형태



3) 정의 및 주요 규제

보험지주회사는 각 주의 의회가 제정한 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어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보험감독의 주별 일관성 유지를 위해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제정 권고하는 Model법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 NAIC 440-1 이하 모델법)¹¹⁾을 따르고 있어 주별 보험법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이하에서는 뉴욕주 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 : 이하 NYIL)과 NAIC 모델법상에 나타난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및 주요 규제를 살펴본

11) 1960년대 이후 지주회사 체제로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1968년 NAIC의 Industry Advisory Committee는 Report on Holding Company Legislation을 제출하였고, 1969년 NAIC 표준법안의 하나로서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가 채택되었다. 이후 미국의 모든 주는 이 NAIC 440-1에 따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보험지주회사법을 운용된다. 김상조(2006).

다.

가) 정의

뉴욕주 보험법¹²⁾상 보험지주회사의 정의는 ‘보험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지배’는 직간접적 보유 또는 대리권 행사를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하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의 경영권 및 정책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모두 지배의 개념에 대해 법문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관계회사’(affiliate)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또는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 ‘지배’가 직간접적인 주식보유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지배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였느냐 아니냐가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¹⁴⁾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간의 차이는 지배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즉 보험지주회사는 직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유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지 및 청문(notice and hearing)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한다.¹⁵⁾ 반면 은행지주회사는 보유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지배로 간주하고, 5% 미만이면 비지배로 간주하되, 5%와 25% 사이에서는 FRB가 재량적으로 판단한다.¹⁶⁾

12) Insurance Law Article 15. Holding Companies

13) NYIL § 1501(a). 물론 보유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사전통지 및 청문회(notice and hearing)기회를 부여한 이후 재량적으로 지배를 판정할 수 있다(NAIC 440-1 § 1C).

14) Lencsis, P. M(1997), p.82 참조

15) NAIC 440-1 § 1(C)

16) 12 USC § 1841(a)(3)

보험그룹의 구성에 있어서는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지주회사, 보험자회사 및 비보험자회사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보험지주회사그룹”을 정의한다. 또한 NAIC의 모델법상 보험지주회사체제는 하나 이상의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관계자(affiliated person)로 구성된다.¹⁷⁾

<표 IV-2> 미국의 보험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구분	지주회사의 정의
은행 지주회사법 (BH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은행) 의결권주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회사 경영진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있는 경우 -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자회사의 경영 혹은 정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뉴욕주 보험법(NY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적으로 주내 보험회사의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나) 감독

보험감독관이 보험회사의 사업, 경영, 재무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지주회사체계 내 회사의 사업에 관련한 정보 공개를 지시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에게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¹⁸⁾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체계 안의 회사는 그 사업이 보험회사의 사업, 경영, 재무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보를 보험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다고 보험감독관이 판단하게 되면 명령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보험감독관은 보고서의 공개가 보험계약자와 주주 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하지 않는다.

보험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보

17) NAIC 440-1 § 1D

18) NYIL § 1504 (a)-(c)

험지주회사 및 비보험자회사에 대해서도 보험감독관이 검사권을 갖는다.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보험자회사가 계열사간 거래에 관해 명시적인 사전승인을 요하는 거래와 사전보고를 요하는 거래로 구분하고 있다.¹⁹⁾ 보험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거래는 지난해 말 보험회사 인정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열사와의 판매, 구매, 교환, 대부, 신용 연장, 투자 등의 거래이다.

그리고 i) 보험회사 인정자산의 0.5% 초과 5%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 ii) 재보험 계약, iii) 규칙적이거나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 iv) 보험계약자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게 30일 전에 거래의향서를 보험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보험감독관은 상기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원칙, 회계기준,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AIC 모델법상 보험지주회사체계 내부거래에 대한 질적기준(Qualitative Standard)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있다.²⁰⁾1

- i)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fair and reasonable)이어야 하고,
- ii) 서비스 제공 수수료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 iii) 비용 부담이나 수취금액이 통상의 보험회계 관행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할당되어야 하며,
- iv) 각 거래 당사자의 회계장부가 거래의 성질 및 내용을 분명하게 공시하도록 기장되어야 하며,
- v) 주주인 관계회사에 대한 배당 및 이익 배분(dividends and distributions)이 보험회사의 총부채에 대비한 보험계약자잉여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적 수요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함.²¹⁾

19) NYIL § 1505(a)-(c)

20) NAIC 440-1 § 5A. 김상조(2006), p.13. 참조.

21) 반면 연방 은행법은 은행과 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건전성 기준(safe and sound banking practices)을 충족할 것을 요구함. 구체적으로는 비교 가능한

이에 따라 뉴욕주 보험법은 지주회사체계 내의 계열사간 거래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율한다.²²⁾

- i)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고,
- ii) 청구 대금이나 수수료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 iii) 보험회사에 대한 비용과 수익의 배분은 보험회계 관행에 부합하는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NAIC 모델법에서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해 보험회사와 그 관계회사간의 모든 중요거래(material transaction)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보고의무를 부과한다.²³⁾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의 보험회사와 관계회사간에 각 거래유형별로 설정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전에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험감독관이 불승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²⁴⁾ 보험감독관은 일련의 다수거래가 사전보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거 12개월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²⁵⁾ 보험감독관은 규정에 의해 사전보고된 거래에 대해 거래의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심사한다.²⁶⁾ 또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보험지주회사체계 전체가 어떤 특정기업(관계회사가 아닌 경우도 포함)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30일 전에 보험감독관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²⁷⁾

비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는 최소한 그 조건으로(on market terms, i.e. at arm's length),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는 '선의로' (in good faith) 거래하여야 한다(12 USC § 371-1(a)(1)).

22) NYIL § 1505(a)

23) 김상조(2006)

24) NAIC 440-1 § 5A(2), § 5B

25) NAIC 440-1 § 5A(3)

26) NAIC 440-1 § 5A(4)

27) NAIC 440-1 § 5A(5)

보험의 Material Transaction 규제방식에 대응한 연방 은행법상의 Covered Transaction(신용공여, 지급보증, 자산구매, 담보취득, 투자 등)에 대해서 다음 4가지 규제를 부과한다.²⁸⁾

- i) 특정 관계회사에 대한 거래총액이 은행자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 ii) 모든 관계회사에 대한 거래총액이 은행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 iii) 거래금액에 대해 100% 내지 130%에 달하는 적격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 iv) 낮은 등급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없다.
- 미국의 지주회사별 주요 규제를 정리하면 <표 IV-3>과 같다.

28) 12 USC § 371c(a)-(c)

<표 IV-3> 미국의 지주회사별 감독관련 규제 비교

종류	규제내용
은행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25% 이상 보유하고자 하거나 일시에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 FRB에 사전통지 - 산업자본의 지배 제한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 : 금지, 5% 이상 25% 미만 : FRB 심사대상, 5% 미만 소유 가능 - 내부거래 규제 은행 및 그 자회사가 관계회사와 특정거래(covered transaction)를 할 경우 개별적인 특정거래는 은행의 연결자기자본의 1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체 관계회사와의 거래액은 은행의 연결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적기시정조치제도 : 연결기준의 자본적정성 기준 - 경영실태평가 : BOPEC제도 운영
금융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지주회사와 동일 - 적기시정조치제도 : 자본충실도, 경영상태, CRA 등급 등 전환요건을 기준으로 운영
보험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감사의무 보험자회사의 운용, 경영 및 재무사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해 보험지주회사그룹의 영업에 관한 사항 중 보험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고서 및 자료를 보험감독관에 제출 - 보험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지주회사 및 비보험자회사에 대하여 보험감독관이 검사권을 가짐 - 내부거래 거래조건이 공평하고 서비스 요금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비용 및 지급이 보험회계 관행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 회계정보 포함 거래당사자의 거래 기록 보관 보험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내 다른 회사간 판매, 구입, 신용공여, 투자 등의 거래가 전년 말 기준으로 보험회사 자산의 5% 이상일 경우 보험감독관의 사전 승인 필요
투자은행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검사 : SEC의 감독근거 규정 - 신용공여한도규정, 행위제한 규정 없음

다) 자산운용 규제

미국 보험법상 자산운용 규제의 핵심은 건전성 유지이며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 자산 또는 자본 대비 비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²⁹⁾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들에 대한 총투자는 보험자회사에 대한 투자, 자회사의 실물재산 및 실물재산에 담보된 대출 투자,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일부 투자(정부채, 우량사 채권 및 우선주, 유사한 외국 투자, 국제개발은행 채권, 주식투자, 투자회사 증권)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 투자자산의 15%를 초과하면 안된다.³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보험감독관이 사전에 서면 승인을 하지 않은 한, 모회사가 자기 계정으로 직접 투자한 모든 자회사의 투자 총가치가 모회사 인정자산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³¹⁾ 단 뉴욕 주에서 주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20%, 비영리 의료보험회사, 건강 및 병원서비스 회사의 모회사는 최대 10%이다. 또한 보험감독관이 사전에 서면 승인을 하지 않은 한, 모회사든 어떤 자회사(분리계정자회사 또는 모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외)든 모회사 인정자산의 15%를 초과하여 한 자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³²⁾ 비영리 의료보험회사, 건강 및 병원서비스 회사의 모회사는 최대 2%까지 투자할 수 있다.

동일회사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투자를 생보사의 경우 인정자산의

29) NYIL 14조(Article 14)의 “투자” (Investment)와 NAIC의 Investments of Insurer Model Act(IIMA) 규정 참조. 민세진(2006), p.5.

30) NYIL § 1611(b)

31) NYIL § 1705(a)(1)

32) NYIL § 1705(a)(2). 우리나라 금융 관련법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험회사 자회사의 업무영역을 보험관련으로 한정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지분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 자산건전성 차원의 규제는 아니다. 민세진(2006), p.5. 참조.

2% 이하, 손보사는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³³⁾, 주식, 파트너쉽지분, CD 등을 통틀어 동일회사에 대한 투자 및 담보 대출을 보험회사 인정자산의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³⁴⁾

NAIC 모델법상 동일회사와 그 계열사에 대한 증권(주식, 채권 등 포함)을 생보사의 경우 인정자산의 3%, 손보사는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³⁵⁾ 동일회사 의결권 주식에 대한 투자 규정은 없다.³⁶⁾

NAIC 모델법에 따르면 보험감독관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제재권한을 갖는다.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³⁷⁾ 기한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하루당 일정 금액의 과태료(penalty)를 부과한다. 보험회사의 이사와 임원이 법령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위반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개선 절차를 거친 후, 위반 건수당 일정 금액 이상의 민사제재금(civil forfeiture)을 부과한다.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즉각 중지명령을 내리고, 사전통지 및 의견개선 절차를 거친 후 보험계약자, 가입자, 공중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무효 및 원상회복을 명령한다. 보험회사 또는 그 이사 및 임직원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징역 등의 형사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³⁸⁾ 보험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법정관리인(receiver)은 그 보험회사의 모회사, 지주회사 또는 실질적으로 그 보험회사를 지배한 자로부터 청산 신청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배당금과 이익분배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한 부분을 회수한다.³⁹⁾

33) NYIL § 1405(a)(6), § 1404(a)(8)

34) NYIL § 1409(a)

35) NAIC IIMA § 8(B)

36)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은 총자산의 7% 이하, 특정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채권 및 주식소유 합계액은 총자산의 12%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보험업법 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37) NAIC 440-1 § 9

38) NAIC 440-1 § 10

미국 보험지주회사의 주식투자 관련 한도 규제는 은행의 경우 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며,⁴⁰⁾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자체도 주(州)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네브라스카에 등기되어 있는 Berkshire Hathaway사는 유수의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⁴¹⁾를 보유하는 보험지주회사이면서⁴²⁾ 보험회사 자산을 이용하여 Coca Cola(8.4% : 보유지분), American Express Company(12.2%), The Washington Post Company(18.0%), Moody's Corporation(16.2%) 등 제조, 유통, 언론 분야 등 대기업의 주요주주로서 투자하고, 산업과 금융을 망라하여 2005년 기준 66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⁴³⁾

4) 자회사 관련

보험회사(subsidiary)가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게 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지주회사의 정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설립허가서 또는 회사정관 및 세척 사본, 주요 주주, 임원, 이사, 지배회사, 자본구조, 재무상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정보와 그 편입사실 등을 보험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⁴⁴⁾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체제 안에 있는 계열사의 업무영역에 관해 제한이 없다. 즉 연방 은행법에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고,⁴⁵⁾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부문의 연간 총수입이 전체 수입의 85% 이상이 될

39) NAIC 440-1 § 12

40) 12 USC § 24

41) 미국 4대 자동차보험회사의 하나인 GEICO, 세계적인 재보험회사인 General Re와 The Berkshire Hathaway Reinsurance Group 등이다.

42) Berkshire Hathaway Inc.는 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보험지주회사로서 그 산하에 자회사 형태로 기간산업(regulated utility business), 금융업, 제조·서비스·유통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함. Berkshire Hathaway사의 CEO 겸 회장인 Warren Buffett은 보험회사 보유의 목적이 투자재원의 확보라고 공언한바 있다(2005 Annual Report).

43) 2005 Annual Report, p.15, p.80.

44) NYIL § 1501(a)

45) 12 USC § 1843(a)

것을 요구한다.⁴⁶⁾

그러나 뉴욕주 보험법이나 NAIC 모델법 모두 보험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다른 회사들의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사업도 영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⁷⁾ 특히 NAIC 모델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업무영역에 제한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비록 주에 따라서는 자회사의 업무영역에 제한을 둘 수도 있으나 NAIC에서는 모델법 작성 초창기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영역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다만, NAIC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업무영역을 비보험 업무로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는 보험관련 업무로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표준법안에서 명확히 규정할 의도는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 권한은 어디까지나 각 주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⁰⁾

자회사의 범위⁵¹⁾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보험회사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²⁾ 다만,

46) 12 USC § 1843(n)

47) NYIL § 1601(a) § 1701(a)

48) NAIC 440-1 § 2(A)

49) 1969년 논의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4가지 규제원칙 중 두 번째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비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있거나 모회사나 계열사 외에도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고 하여 자회사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민세진(2006), p.5.

50) NAIC 440-1 § 2A Drafting Note 김상조(2006). 참조.

51) NAIC는 각 주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영역을 비보험 업무로까지 확대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대체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영역에는 다음과 같다. i) 보험업무, ii) 보험중개인 및 보험대리점, iii) 자기 계정 또는 그 모회사, 모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계정 상의 유가증권 투자·재투자·거래, iv)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관리, v) 투자자문 제공, vi) 계리, 회계, 채권추심 등 보험관련 서비스 제공, vii) 모회사가 직접 소유·관리할 수 있는 자산의 소유·관리, viii)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구의 관리관리인, x) 보험료 납부를 위한 신용공여 등 소비자 금융, xi) 보험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로 보험감독관이 결정한 업무, xii) 상기 허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소유(NAIC 440-1 Alternative § 2A).

52) 그러나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는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사전적 소유규제나 업무

은행지주회사법상의 예금취급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Fe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또한 보험계약자, 가입자, 공중의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감독관이 판단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라미드 출자방식의 자회사 지배(pyramiding subsidiaries)를 막는 규정을 도입 할 수 있다.⁵³⁾ 미국의 지주회사별 자회사 범위 및 업무를 비교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미국의 지주회사별 자회사 범위 및 업무 비교

	업무 및 자회사
은행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B가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둠 - FRB 승인없이 비은행회사(보험, 증권) 자회사 허용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관련보험인수, 인구 5,000명 이하지역에서 보험상품 판매하는 보험회사, 증권업 비중이 25% 이하인 증권회사 · 비은행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초과 소유 못함
금융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으로 금융업의 성격을 갖는 업무(financial in Nature)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incidental to such financial activity)를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둠 * 금융업의 성격을 갖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을 위한 대출, 환전, 송금 및 투자업무 또는 현금·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2) 보험·보증 및 배상업무 또는 연금의 지급업무 및 이를 본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행하는 업무 (3) 금융, 투자 또는 경제에 관한 자무업무, (4) 은행의 직접보유가 허용되는 자산 풀(pool)에 대한 권리(지분)를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업무 (5) 증권의 인수, 자기매매 또는 시장조성 업무등
보험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투자은행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제 없음

영역 규제는 없지만 중요거래에 대해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요거래건별로 보험감독관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상조(2006) 참조.

53) NYIL § 1707

다. 보험 외 금융지주회사

1)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란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서 BHCA에 의해 FRB에 은행지주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⁵⁴⁾ 여기서 “지배”⁵⁵⁾라 함은 i)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경우, ii)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i) 지분율이 5% 이상 25% 미만이나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FRB가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는 은행지주회사가 그 산하에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비은행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비은행업무를 “은행업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로 제한하고 그 결정권을 FRB에 부여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주식교환방식을 통하여 자회사인 은행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며, 은행지주회사 설립 후 동 주식을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유가증권의 인수·매매 등 증권 고유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총수입의 25% 이내인 경우에는 증권자회사를 둘 수 있다. 또한 대출관련보험을 인수하거나 인구 5천명 이하지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자회사를 둘 수 있다.

54) BHCA Sec.2 (a)(2)

55) BHCA Sec.2 (a)(3)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업지주회사가 허용된다. 또한 동일인의 은행소유와 관련,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25% 이상 보유하고자 하거나 일시에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FRB에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⁵⁶⁾

건전성 규제 및 감독차원에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공여한도규제가 없으며, 은행지주회사내의 내부거래에 대한 근거법규는 은행지주회사법이나 Regulation Y가 아닌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이다. 동 법에 의해 은행 및 그 자회사는 그룹내 개별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은행의 연결자기자본의 10%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전체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의 연결자기자본의 20% 내에서 가능하다.

FRB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연결기준의 자본적정성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운영하며,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BOPE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본충실도, 경영상태, CRA등급 등 전환요건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BOPEC제도는 은행지주회사를 은행자회사(bank subsidiaries), 비은행자회사(other subsidiaries), 모회사(parent), 수익성(earnings),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은행지주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및 경영관리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한다.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란 충실한 자기자본, 양호한 경영관리상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증권·보험업 등을 겸업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⁵⁷⁾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지주회사는 과거와 동일하게 은행업 및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은행지주회

56) Regulation Y Sec.225.41

57) Gruson, Michael / Ralph Reisner(2000), pp.224-227.

사는 은행 등 모든 금융업을 업무범위로 하는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둘 수 있다.⁵⁸⁾

업종별 지주회사에서 전 금융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은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 Glass-Steagall법이 폐지되고 GLB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LB법상의 금융지주회사의 근거법률은 은행지주회사법이며 포괄적 감독당국은 FRB이다. GLB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umbrella supervision) 기능을 FRB에 부여하고 금융지주회사내에 비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별 감독(functional supervision)을 인정하고 있다.

설립절차는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에는 이를 FRB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신고후 30일 이내 FRB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자회사를 처분하여야 한다.⁵⁹⁾ 외국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RB의 인가가 필요하다.⁶⁰⁾

은행지주회사에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요건을 충족하여 FRB에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적정성 요건으로, 은행지주회사내 모든 예금기관 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양호(well capitalized)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영상태요건으로, 은행지주회사내 모든 예금기관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well managed)할 것을 의미한다. 셋째, CRA⁶¹⁾등급요건으로 은행지주회사내

58) Sec.102. GLB Act는 은행지주회사가 일정한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 업무영역을 금융관련활동, 즉 증권거래업, 보험중개업, 보험업, 상업은행 등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59) Sec.103 (a) (2) (A) (ii)

60) Sec.152

61)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1977 : CRA)은 중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으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다.

부보예금기관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지역채투자법(CRA)에 의한 지역 신용수요 충족도 평가가 “satisfactory”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기관 또는 일반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한 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때 총수익의 85% 이상이 금융업에서 발생하여야 하고 비금융업무는 10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⁶²⁾

FRB는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의 업종에 따라 제한된다. 즉, 중개인, 판매업자, 투자상담사, 그리고 투자회사의 자회사들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보험회사의 자회사들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주보험감독청이 감독한다. 예금은행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투자은행업과 보험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대신에 투자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독은 주보험당국 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선택적으로 담당하게 된다.⁶³⁾

금융지주회사는 사실상 모든 금융업무를 포함하는 본질적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⁶⁴⁾를 직접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본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금융업무 외에도 타 업종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을 자회사화 하므로써 업무영역의 확대가 가능하다.

3) 투자은행지주회사

62) Michael Gruson/Ralph Reisner(2000), p.229.

63) Sec.111

64) FRB가 본질적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여부를 결정하며, 동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Regulation Y Sec.225.86에서 규정. 은행지주회사법에서 인정하는 본질적 금융업무로는 ① 대출, 환, 자금이체, 타인을 위한 투자업무,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호예수업무 ② 보험·보증, 배상업무, 연금업무 ③ 자문업무, 유가증권 인수·매각 또는 시장조성 업무 ④ 종합금융업무 ⑤ 기타 FRB가 은행업무 또는 은행을 경영하고 지배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업무

투자은행지주회사라 함은 하나 이상의 증권브로커 또는 딜러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회사 및 투자은행지주회사의 관계회사를 지배 또는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⁶⁵⁾

1973년 메릴린치가 투자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한 이래 모건스탠리, 리만브라더스 및 골드만삭스 등 대부분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대형화 및 그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19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로소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투자은행지주회사 관련조항 신설되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투자은행지주회사가 산하에 예금취급기관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괄적 감독당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⁶⁾ 투자은행지주회사라 할지라도 SEC를 포괄적 감독당국으로 선택하지 않거나 예금취급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한다면 FRB가 포괄적 감독당국이 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은행지주회사는 SEC를 포괄적 감독당국으로 선택한 투자은행지주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의 경우에도 SEA에는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검사 등에 대한 SEC의 감독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⁶⁷⁾ 신용공여한도규제나 행위제한규정은 없다.

투자은행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 범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2. 일본

65) SEA Sec.17(i)(5)

66) SEA Sec.17(i)(1)

67) SEA Sec.17(i)(3)

가. 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종류

1) 지주회사 도입배경

일본에서는 전후 해체된 재벌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1947년에 제정된 독점금지법에 의해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엄격히 금지해⁶⁸⁾왔다. 그러나 이후 1997년 6월 독점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해금과 관련된 독점금지법 개정에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근본적 타개책을 일본식 금융빅뱅을 통해 해결하려는 하시모토(橋本) 내각의 금융개혁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금융빅뱅은 금융시장을 ‘Free, Fair, Global’이라는 원칙하에 금융경제의 자율경쟁 실현, 자산거래 자유화,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통합의 기본목표를 1997년부터 3년간 세부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정책으로 1998년 6월에는 ‘금융시스템 개혁법⁶⁹⁾’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된다. 금융빅뱅의 핵심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해금은 금융산업 재편과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세계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다변화와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목적이 있었다⁷⁰⁾.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된 이후 은행, 증권, 보험회

68) 2차대전 前 재벌의 본사는 순수지주회사 방식으로 주식 소유를 통한 기업 지배를 유지하다가 미군정하에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독점금지법이 1947년에 제정되었으며, 1949년에는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독점금지법이 개정되어 이후 사업지주회사가 설립이 가능해 졌다.

69) 정확한 법률 명칭은 ‘금융시스템개혁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98. 6)’ 이지만 이하 ‘금융시스템 개혁법’ 이라 명칭한다.

70) 1990년대 들어 경제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관점에서 경제단체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해금 주장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19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사 등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업법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은행·증권·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대장성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관련 해당 사업법의 개정을 착수하여 1997년 12월 금융지주회사 관련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표 IV-5> 일본의 지주회사 관련 입법 과정

연도	주요정책	주요 내용
1996. 4	-신보험업법의 제정	
1996.11	-금융빅뱅 정책 추진	겸업주의 체제 전환 기반
1997. 6	-독점금지법 개정	순수지주회사 허용
1997.1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 제정	정비법(보험업법개정 포함), 창설 특례법('98.3 시행)
1998. 3	-보험지주회사 설립 허용	은행, 증권지주회사 허용
1998. 6	-금융시스템 개혁법 제정	금융겸업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법 개정
1998. 6	-보험업법 개정	상호진입 허용(자회사) 등
1998.12	-금융업종간 상호진입 허용	업종간 자회사 방식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지주회사 관련법은 두 가지 법률로 이루어지는데 「지주회사의 설립 등 금지의 해제에 수반한 금융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정비법’)」 과 「은행지주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한 합병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창설특례법’)」 이다. 여기서 ‘정비법’은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은행 등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자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감독상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정비한 법률이다. ‘창설특례법’은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식 중 탈각방식 및 공

개매수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수단으로 미국의 삼각합병방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상법 및 은행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⁷¹⁾.

한편, 일본판 금융빅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인 1998년의 금융시스템 개혁법이 제정되어 자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시스템 개혁법은 보험업법을 포함한 24개 금융관련 법안의 개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이 법률에 따라 1998년 12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상호진입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은 1998년 6월 ‘금융시스템 개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청이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권역별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사업력 지배의 과도한 집중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은행업무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 확보를 위하여」 (은행법 제52조의32),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업법제271조의28), 증권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증권회사 거래의 공정성 및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공익 및 투자자보호」 (증권거래법제59조) 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6> 일본의 금융업종간 자회사 진입규제 해금 일정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은행업무		1993. 4 이후	1999.10 이후
증권업무	1999.10 이후		1998.12 이후
보험업무	1998.12 이후* 2000. 4 이후	1998.12 이후	

주 : *는 부실보험회사 인수에 한정

자료 : 「1999 FACT BOOK」, 日本損害保險協會, 2000년에서 재구성

71) 예금보험공사,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지주회사제도」, p13, 2000.4

2) 설립 방식과 제한

가) 지주회사 설립방식

일본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단일 통합법령에 의해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별 각각의 사업법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및 미국과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금융지주회사라는 법률적 정의는 없고 다만, 은행·증권·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여 법률적으로 정의한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와 다소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⁷²⁾.

일본에서 독점금지법상 사업지주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나 해당 사업법에서 금융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한 순수지주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회사의 사업지주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 사업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舊제별 해체 이후에도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력 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설립방식에는 탈각방식, 삼각합병방식, 공개매수방식, 주식교환·이전방식, 회사분사화 방식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 주식교환·이전방식이나 회사분사화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이들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을 선호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설립 절차 및 비용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상 자회사의 설립 및 인수, 합병 등이 다른 방식

72) 일본 금융청의 금융지주회사 검사매뉴얼에서 정의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법 제2조제13항에서 규정하는 ‘은행지주회사’, 장기신용은행법 제16조의4에서 규정하는 ‘장기신용은행지주회사’, 보험업법 제2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지주회사’, 증권업법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증권지주회사’ 또는 이들 복수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회사법으로 가능한 탈각방식은 금융기관이 먼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주총의 특별결의에 의해 영업일체를 동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 남아있는 현재의 母 금융기관이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만 출자할 수 있고 부채를 출자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⁷³⁾.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창설특례법’에 의해 삼각합병방식이 도입되었다. 삼각합병방식은 예컨대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 기존의 보험회사가 설립한 지주회사가 신설 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설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미국식 삼각합병방식과 유사하다. 이 방식은 보험지주회사 설립시 다음과 같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설립특례법은 기존 보험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둘째, 보험지주회사 설립 후 보험 자회사를 분사화하거나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을 완전자회사화 하기 위한 조치의 마련이 미흡하였다.⁷⁴⁾ 이러한 지주회사 설립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설립특례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미미하였으며, 이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9년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식교환·이전방식은 기존 母 금융기관의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일본의 많은 보험회사들이 선호하였다. 주식이전방식에 의해 설립된 사례로는 동경(東京)해상과 니치도(日動)화재가 공동으로 설립한 Millea Holdings, AXA와 일본단타이(團體)생명이 공동 설립한 AXA Holdings Japan, 후지(富士)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공동 설립한 Mizuho Holdings 등이다. 또한 주식교환 방식에 의해 설립된 사례로는 상와(三和)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이 설립한 UFJ Holdings 등이 있다.

73) 橋木俊詔(1998), p 3

74) 예금보험공사(2000), p 15

나) 지주회사 설립 규제

개정 독점금지법(2002) 제9조 3항에서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3가지 유형의 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 시키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은 첫째, 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므로써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둘째, 계열간 거래로 타 회사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것, 셋째, 국민경제에 영향이 크고, 경쟁촉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무적 판단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⁷⁵⁾을 통해 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형태의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舊재벌과 같은 기업집단 유형으로, 그룹 총자산이 15조엔이 넘고 동시에 5개 이상의 주요 사업 분야에서 각각 총자산 3000억엔이 넘는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대규모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유형으로 총자산 15조엔이 넘는 금융기관과 총자산 3000억엔이 넘는 일반 사업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상호관련이 있는 유력기업을 갖고 있는 유형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5개 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에서(기업규모 등에 따라 3개 분야 이상) 각각 유력회사(시장점유율 10%이상 또는 상위 3위 이내)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⁷⁶⁾

한편, 현행 독점금지법(2002)에서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 합계액이 6천억엔을 초과할 경우, 지주회사를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는 8조엔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설회사의 경우 3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⁷⁷⁾. 즉, 일본의 경우 총자산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공정거

75) 제9조 가이드라인, 「事業支配力が過度に集中することとなる会社についての考え方」, 2002.11

76) 제9조 가이드라인(2002)

77) 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필요성 때문에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1997년과 2002년의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상당수 삭제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에서는 지주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및 전환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보험지주회사제도

1) 정의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⁷⁹⁾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 정의한다. 여기서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를 말하며⁸⁰⁾, 자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⁸¹⁾.

또한, 보험지주회사는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한 회사의 경우 예외로 인정⁸²⁾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심의회는 상호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회사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며, 지주회사는 주식회사의 방식이 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회사가 지주회사로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보험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둘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되어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78) 김건식·노혁준(2005), p 70

79) 보험업법 제2조 16항, 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80) 보험업법 제2조 12항

81) 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82) 보험업법 제271조의18 제2항

회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의 관련규정을 적용받는다.⁸³⁾

2) 설립인가 등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경영관리 하는 것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하고 있다⁸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금융청을 관장하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⁸⁵⁾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시 해당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의한 보험회사 의결권의 취득, 해당 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보험업 면허의 취득 등은 인가대상이다.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할 경우 사전 인가전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⁸⁶⁾. 보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 없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으나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⁸⁷⁾

보험지주회사의 인가에 대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인가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⁸⁾. 지주회사 인가 후 6개월 이내 인가사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경우는 제외) 또는, 보험지주회사 주요주주가 보험회사의 주요주주 기준요건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가 취소된다.

한편,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합병 및 분할 또는 영업권의 양도·양수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⁸⁹⁾. 보험지주회사가

83) 보험업법 제271조의22 제6항

84) 보험업법 제271조의21 제1항

85) 보험업법 제271조의18 제1항

86) 시행규칙 제210조 4

87) 보험업법 제271조의22

88) 보험업법 제271조의33

89) 보험업법 제271조의31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지주회사가 분할할 경우 보험지주회사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보험지주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 보험지주회사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시행령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지주회사의 총자산 대비 부채액 1/20 이하의 영업권의 일부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⁹⁰⁾

3) 감독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는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271조의28) 금융청이 감독 및 검사권한을 수행한다. 보험지주회사는 주식보유를 통하여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보험회사의 형제회사 등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포함한 포괄적 감독이 필요하다.

보험지주회사는 영업년도별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타 보험지주회사와 특수관계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연결기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⁹¹⁾.

내각총리대신은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입점 검사권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수시·상시) 보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해 그 취지를 표시하고, 그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 검사권한을 행사⁹²⁾

90) 시행령 제37조의 5의 7

91) 보험업법 제271조의24 제1항

92) 보험업법 제271조의27 제1항 및 제271조의28 제3항

한다. 그러나, 일반사업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보험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회사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입점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⁹³⁾.

내각총리대신은 보고 및 제출을 통해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보험계약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충분할 경우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⁹⁴⁾. 다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⁹⁵⁾. 또한, 내각총리대신은 보험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및 자회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가 법령, 약관,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공익상 해를 끼친 경우 그 회사의 임원 및 감사역을 해임시킬 수 있으며, 보험지주회사의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⁹⁶⁾.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가 받지 않은 보험회사나, 자격상실 잔존기일 이후에도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⁷⁾.

4) 자산운용 규제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 규제를 두고 있다. 보험지주회사그룹 차원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가 없으며, 다만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일반적인 동일인 운용한도 규정이 적용 한다⁹⁸⁾.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자신 및 동일인(동일인자신+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10%, 보험회사 주요주주 및 보험회사주

93) 보험업법 제271조의27 제2항 및 제271조의28 제4항, 271조의11 제2항

94) 보험업법 제271조의29 제1항

95) 보험업법 제271조의29 제2항

96) 보험업법 제271조의18 제1항 및 3항

97) 보험업법 제271조의30 제4항, 제317조 제7호, 제132조

98) 보험업법 제97조의2, 시행규칙 제47~제48조의5

요주주의 동일인(주요주주+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6%로 제한한다. ‘보험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을 기준한 동일인 운용한도는 보험회사 단독한도와 비율이 동일하며, 단지 ‘합산총자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⁹⁹⁾, 여기서의 특정관계자는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여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특정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의 매매나 기타 거래 금지하고 있다. 당해 특정관계자간 또는 당해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해당 보험회사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5) 자회사 관련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업종과 관련하여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열거된 금융관련회사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비금융업종의 자회사를 인정하고 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금융관련 자회사의 범위 및 승인 거부업무는 <표IV-7>과 같다.¹⁰⁰⁾ 내각대신은 사전 승인이 불필요한 자회사 범위에 해당한다 해도 <표IV-7>의 승인거부 업무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¹⁾.

99) 보험업법 제100조의3

100) 보험업법 제271조의22 제1항

101) 보험업법 제271조의22 제3항

<표 IV-7> 사전 승인 불필요 및 승인 거부 자회사 업무

사전 승인 불필요 자회사 범위	승인 거부업무 ¹⁰²⁾
①생명보험회사, ②손해보험회사, ③은행, ④장기신용은행, ⑤증권전문회사, ⑥해외 보험회사, ⑦해외 증권회사, ⑧해외 은행, ⑨시행령에서 정한 상기(①~⑧)회사의 종속업무, 시행령에서 정한 은행·증권·보험업 부수업무, ⑩신사업분야 회사	①업무내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②국민생활 안정 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촉될 업무 ③자회사의 자본금, 인적구성 등에 비추어 경영 건전성에 위험성이 큰 업무 ④자회사의 경영 건전성 훼손으로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업무

독점금지법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은행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을 자회사화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또한 주식소유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일반기업 소유를 제한한다. 은행주식소유에 대한 은행법상 제한은 없으나, 독점금지법에서 경제력 집중 및 방지차원에서 일반회사 및 개인이 타 국내회사(금융기관 포함)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소유를 금지한다¹⁰³⁾.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로 인가한 경우 은행지분 5% 초과 보유시 신고하도록 하고, 20% 초과 보유시에는 사전승인을 요구한다.¹⁰⁴⁾ 국내 타 회사의 주식소유 한도는 은행의 경우 5%, 보험회사의 경우 10% 이내로 제한된다.¹⁰⁵⁾ 또한 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일반사업회사 주식소유 한도가 15% 이내로 제한된다.¹⁰⁶⁾

102) 보험업법 제271조의2 제3항

103) 독점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104) 은행법 제3조의2, 제52조의2 제1항, 52조의9 제1항

105) 독점금지법 제11조

다. 보험 외 금융지주회사

1) 은행지주회사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¹⁰⁷⁾ 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⁸⁾.

독점금지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보면 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를 자회사라 하며¹⁰⁹⁾, 지주회사는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를 지칭한다.¹¹⁰⁾ 따라서 은행지주회사는 특정 은행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보유하는 은행주식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¹¹¹⁾, 내각총리대신은 수지전망, 자본충실도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전환 및 설립 인가여부를 결정한다.¹¹²⁾ 은행지주회사는 주식회사 형식에 의한 전환 및 설립인가,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내각총리대신의 인가 대상이 되나,¹¹³⁾ 은행업에 부수하거나 종속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은행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순수지주회사로 한정한다.¹¹⁴⁾ 은행지주회사가

106) 은행법 제52조의24 제1항

107) 은행법 제2조 제13항

108) 은행법 제2조 제12항

109) 독점금지법 제9조 제4항

110) 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 제1호

111) 은행법 52조의17 제1항

112) 은행법 52조의18

113) 은행법 제52조의23 제3항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기관에는 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전문회사, 증권중개 전문회사, 보험회사, 신탁전문회사,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신탁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위에 열거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에 종속되는 업무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자회사 영위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로서 내각부령이 정한 회사, 은행 또는 위에 열거된 회사만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내각부령이 정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¹¹⁵⁾ 비금융회사는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한 회사를 제외하고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발행주식의 소유한도는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¹¹⁶⁾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규제는 은행지주회사 의결권의 5%를 초과해 보유하는 자(의결권 대량보유자)는 초과 또는 변동시 신고해야 하도록 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를 두고 있다.¹¹⁷⁾ 또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주주 기준치를 초과해 의결권을 보유하려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전인가를 요건¹¹⁸⁾으로 하고 있다. 사전인가 요건의 대상은 은행 주요 주주의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15%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회사의 재무·영업·사업방침 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해당된다.¹¹⁹⁾

은행지주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부거래 규제를 두고 있다. 신용공여액은 은행지주회사 그룹(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을 기준으로 동일인 자신(동일인 1인)에 대해 25%, 동일인(동일인 1인 + 특수관계인)에 대해 40%를 초과를 금지하

114) 은행법 52조의21

115) 은행법 제52조의23 제1항

116) 은행법 제52조의24

117) 은행법 제52조의2~제52조의8

118) 은행법 제52조의9

119) 은행법 제2조 제9항, 제10항

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은 연결기준 자기자본액이고 신용공여액은 [각사 신용공여 합계액 - 조정대상액(지주회사나 자회사 등이 보증한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지주회사 그룹내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가격 거래를 의무화하고 있다.¹²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결기준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가 해외영업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 유지해야 하며, 해외영업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4% 이상 유지를 요건으로 한다.

2) 증권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보험지주회사와는 달리 특별한 규정 없어 증권지주회사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설립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또한, 자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다.

감독내용도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및 수검 의무만 부여한다.¹²¹⁾ 자본적정성 규제는 개별 증권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유럽¹²²⁾

유럽의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융겸업화가 진전되고 여러 금융업종별 M&A가 진행됨에 따라서 복합금융그룹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는 일반 회사법적인 규제 외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제도적 제약 없이 지주회사가 설립된다.

120) 은행법 제13조의2

121) 증권거래법 제59조

122) 자세한 내용은 이견범, 김우진(2005), pp.30-38 참조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유니버설뱅킹(universal banking) 전통이 강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그룹이 존재해 왔다. 유럽의 금융그룹 사업유형을 보면 사업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 사업부문, 수평적 기업집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유럽의 복합금융그룹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유럽의 경제금융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에서는 복합금융그룹위원회(Financial Conglomerates Committee)를 설립하여 여타 금융관련 위원회와 함께 복합금융그룹지침(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 2002.12.16 이하 FCD)을 작성하였다.

EU차원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각 권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2년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에 대한 감독지침이 마련되어 감독방식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권역별 감독당국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동시에 그룹소속 금융기관을 은행, 보험 등 동일 업종별로 구분·통합하여 감독한다. 아울러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은행, 증권, 보험을 결합한 복합금융그룹의 증가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업종별 감독에 추가하여 복합금융그룹을 그룹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FCD 제정, 통합 감독하고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조직규모가 방대하고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복합한데다 특정회사 부실의 타사로의 전염, 규제 회피적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복합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기관의 업종과 무관하게 그룹 내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감독하는 FCD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은 그룹내 개별기관별 감독, 동종 그룹별 감독, 복합금융그룹 전체 감독의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권역별 감독당국은 복합금융그룹소속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개별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개별기관별 감독은 EU차원에서 제정된 은행업 지침, 생명보험업지침, 손해보험업지침, 투자서비스업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동종금융그룹 감독은 은행 및 증권 그룹, 보험그룹 두 가지 그룹에 대해 이루어진다. 은행과 증권그룹에 대한 감독은 Banking Consolidated Directive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감독당국은 그룹내 모회사가 되는 은행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상태에 기초하여 연결감독을 수행하며, 주요 감독대상은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적정성, 거약신용공여,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제한,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등이다.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은 보험그룹지침(insurance group directive)에 따라 조정개별기준(solo plus)으로 이루어는데, 그룹 전체를 연결기준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효과(group effect)를 제거한 후 개별 보험회사별로 재무상태를 감독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보험그룹에 대한 주요 감독대상은 개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상태 및 그룹내 내부거래 등이다.

복합금융그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룹으로 정의하며, 아래의 5가지 테스트를 통하여 복합금융그룹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¹²³⁾

첫째, 그룹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룹이란 연결기준상 모·자회사뿐만 아니라 연결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호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수평적 기업집단을 포함한다.¹²⁴⁾

둘째, 최상위에 있는 모회사(the head of the group) 또는 1개 이상의 자회사가 기존 업종별 감독지침에 따라 규제를 받는 은행 및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해당한다.¹²⁵⁾

셋째, 최상위에 있는 모회사가 비규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그룹이 금융업을 주로 영위해야 한다.¹²⁶⁾ 즉, 금융부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40%를 초과해야 한다.¹²⁷⁾

넷째, 그룹이 1개 이상의 보험업 관련회사 및 1개 이상의 은행 또는

123) FCD Article 2(14), Article 3

124) FCD Article 2(9), Article 2(12)

125) FCD Article 2(14) (a)

126) FCD Article 2(14) (c)

127) FCD Article 3(1)

증권업 관련회사를 보유하여야 한다.¹²⁸⁾

다섯째, 보험업과 은행 및 증권업의 총자산 및 필요자기자본이 그룹 금융부문 대차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를 초과해야 하며 가장 규모가 작은 금융업의 자산규모가 60억 유로를 초과¹²⁹⁾하여야 한다.

FCD에서는 규제대상 기관의 범위를 복합금융그룹의 최상위 모회사인 모든 규제대상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를 포함시키고 있다¹³⁰⁾. 또한 EU내에 본사가 있는 혼합금융지주회사(mixed financial holding company)¹³¹⁾가 모회사인 규제대상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모회사가 규제대상 기관이거나 혼합금융지주회사이면서 모회사가 EU지역 외에 본사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동 지침의 Article 18 및 19의 적용을 받는다.

복합금융그룹의 감독규정은 크게 감독조정자(co-ordinator)에 의한 감독¹³²⁾, 자본적정성¹³³⁾, 리스크 집중¹³⁴⁾ 및 내부거래¹³⁵⁾, 내부통제체제 및 리스크 관리 절차¹³⁶⁾, 모회사가 EU내 회사가 아닌 경우 복합금융그룹 감독¹³⁷⁾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지주회사의 생성은 20세기 초반 영국 산업의 낙후와 연결되었으며, 개인기업 및 가족기업으로서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지주회사가 채택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¹³⁸⁾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은 대중자본의 모집,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

128) FCD Article 2(14) (d)

129) FCD Article 3(2)

130) FCD Article 5(2)

131) FCD Article 2(15)

132) FCD Article 10, 11, 12

133) FCD Article 6

134) FCD Article 7

135) FCD Article 8

136) FCD Article 9

137) FCD Article 18

138) Chandler(1990), 이재형(2000), pp.132-134 재인용

한 외부 경영자원의 영입을 계속한 반면, 영국기업은 초기의 독점적 상태에 안주하여 개인 혹은 가족 기업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국의 최고경영자는 창업주 혹은 지배주주로서 이들은 기업의 발전(규모 확대) 보다는 자신의 현금흐름이나 계속적인 수입을 중시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기업특성이 차이로 인해 영국 산업은 20세기 초반부터 낙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개인기업 및 가족기업으로서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지주회사제도가 채택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영국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의 기업들에 비해 개인이나 이들의 집단(주로 가족과 소수의 경영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며, 독점의 유지를 위해 이러한 기업들이 연합체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지주회사가 되었다.

영국에서도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없어 지주회사 형태의 회사 조직이 보편화되었다. 지주회사 형태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가 공존하는 상황이나, 최근에는 사업지주회사 형태에서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변해가는 추세이다.¹³⁹⁾

영국은 경쟁법상 순수지주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영국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고 다만, FSA의 감독편람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통합금융법인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1.11.30)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한 규정 또한 없다.

회사법(Company Act, 1985)상 지주회사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다만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 FSA)의 감독편람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이다.

139)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2003.12, p.30.

은행업과 증권업간에는 업무장벽이 없으나 보험업은 보험회사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신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회사, 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은행의 발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FSA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후신고를 하도록 규제한다. FSA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감독·검사는 하지 않으나 자회사에 대한 인가권 행사에 의하여 지주회사 관련정보를 획득하거나 연결기준의 감독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주회사를 감독한다. 그러나 연결기준의 자기자본규제는 보험회사를 제외하여 적용함에 따라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간접적 감독도 제약적이다.

영국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취득 후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일 경우, 혹은 양도자산이 7,000만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에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 지주회사의 설립에도 적용된다.

독일기업들은 이윤 풀(profit pool : interessen gemeinschaften)과 콘체른(konzern)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였다. 미국이 반트러스트 정책을 강화해 온 것과는 달리 독일은 강력한 카르텔과 기업간 협정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산업을 발전시켰다. 카르텔의 결성 및 운영을 위해 협회 등 사업자 단체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카르텔이 제도적으로 육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은 이탈자가 많아 수시로 붕괴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이윤풀과 콘체른이다. 이윤풀 하에서는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의 이윤을 모아 할당하였으며 콘체른의 경우도 기업간 재산의 이동을 통해 이윤의 차이를 보전하므로 카르텔 이탈 유인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지주회사의 특징은 조직이 아니라 지배구조에 있다.¹⁴⁰⁾ 독일은 전통적으로 산업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이 강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의 많은 부분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사업회사 주식을 은행이 보유하는 데 대한 규제도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기업그룹의 정점에

140) 武藤泰明(1997), 이재형(2000) p.135. 재인용

있지만, 그 위에 또 하나의 정점으로 은행이 존재한다.

독일의 기업그룹 규제의 특이사항으로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지주회사 등으로 인하여 기업간 모자관계가 형성되면 이들 기업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재산의 이전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기업 이해 당사자들간의 권리·의무에 변동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배·종속기업 간의 콘체른 관계를 인정하여 이들간 채권의 승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수많은 유럽회사들이 이들 나라에 지주회사를 두고 명목상의 본사로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회사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세제상의 특징으로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손익을 통합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이나 자회사 매각 등에 따른 자본소득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하므로 유럽 지역의 총괄회사로서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¹⁴¹⁾

141) 松下滿雄 外(1996), 이재형(2000) p.136. 재인용